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43
----------	-------

발의연월일 : 2018. 12. 13.

발 의 자 : 김철민 · 이수혁 · 김현권
강훈식 · 윤관석 · 신창현
윤영일 · 박 정 · 이찬열
황 희 · 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46,484개의 기계식주차장 중 11,019개(23.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50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여명이 사망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명령·처분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2조의3(명령·처분 등의 통보)</u>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u> <u>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u> <u>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u> <u>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u> <u>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p>